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2, pp.313-319, May 31,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313
JCCT 2019-5-39

지방정부의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 :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패러다임의 변환

Plans to Strengthen Children's Rights for the Creation of Child Friendly Cities by Local Governments: The Conversion of Child Welfare Paradigms into Universal Welfare

최선경

Choi sun-kyung*

요 약 최근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차원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하고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정신이자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을 고찰한다. 둘째, 현대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가 구성된 역사적 기원과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셋째,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주요어 : 지방정부,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편적 복지, 아동복지패러다임

Abstract Recently, policies of metropolitan councils and primary local governments are diversely developing for the creation of child friendly cities. This study attempts to deal with implications that discussions on child friendly cities, which are recently becoming issues of local communities, have as a form of universal welfare on dimensions of child welfare along with discussions of the direction to which those implications can be applied. For this, this study was conducted largely in three parts. First, it observes the content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is the spirit and basic foundation of child friendly cities and through this, it examines child welfare paradigms as a universal form of welfare and second, it observes the historical origin of child friendly cities that have modern significance along with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hild friendly cities, and third, it explores methods with which to apply locality based community resource connections that currently exist to policies of child friendly cities.

Key words : local governments, child friendly cities, children's rights, universal welfare, child welfare paradigms

*정회원,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접수일: 2019년 2월 21일, 수정완료일: 2019년 3월 23일
게재확정일: 2019년 4월 18일

Received: February 21, 2019 / Revised: March 23, 2019
Accepted: April 18, 2019
*Corresponding Author:sun @ silla.ac.kr
Dept. of Social welfare, Silla Univ, Korea

Ⅰ. 서 론

최근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란 유니세프의 인증절차를 거쳐인증되는 도시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의 정신을 기초로 아동 및 청소년의 보편적 4대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가 온전히 실현되는 도시를 의미한다[1]. 즉,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여 아동의 핵심역량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시'로 정의된다[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의 기본 이념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가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임을 표방하고 있으며, 아동의 나이를 만18세 미만으로 보고 있다. 유니세프는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의 4대권리를 잘 실천하는 지역사회로 정의한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각 지자체에서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3].

유니세프(1996, 2001)는 아동친화도시를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도시 지역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일반적으로 성인과는 다른 아동의 발달과 행태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적합하게 조성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아동만의 특별한 발달욕구를 인정하여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담겨져야 한다고 하였다[4]. 이와 같이, 유니세프는 지방정부의 차원에서의 도시지역사회 시스템 구축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바, 이는 현재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지역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긍정적 여지가 크다.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살펴 볼 때, 현재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된 도시는 30개국 1,300여개이다. 국내에서도 2013년 서울시 성북구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움직임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50여개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아동친화 도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곳은 총 28개의 광역· 기초자치단체이다[5].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평가절차와 인식의 수준에서 다루어져 왔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개념 및 필요성에 대한 기초지식이 제공되었다[6-8].

한편, 지방정부추진 차원에서 아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아동권리강화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복지에 있어서 기존의 잔여적 복지 성격*이 아닌 보편적 복지성격으로서 지방정부가 추진해야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지역특수성을 기반으로 한 아동권리강화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고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아동친화도시의 정신이자 기본토대를 이루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살펴보고 둘째, 현대적 의미의 아동친화도시가 구성된 역사적 기원과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아동친화도시가 갖고 있는 함의를 보편적 복지로서의 아동복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성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를 강화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권리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UN아동권리 협약의 '4대 권리'

지난 1989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CRC)은 아동 삶의 질(children's well-being)을 논의하는데 실질적인 척도이자 규범적인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이 권리의 주체 이며,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조항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이념이 아닌, 실제 실현해야 하는 법적 조항이라는 점이다. 아동권리협약(CRC)에 포함된 아동의 4대 기본권은 아동이 속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며, 환경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건을 살펴봄으로서 개선되어야할 현안을 짚어준다[1-2].

특히,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은 성인사회 중심으로 정책의 일련과정이 이루

* 잔여적복지제도란 소득·재산 등의 능력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자산조사(means test)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개인의 복지문제를 개인이 책임지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가의 책임은 최소화 된다.

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형성해야 할 아동중심의 성숙된 아동관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아동복지 정책 틀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인사회의 노력이었다면 아동권리협약에서 보는 아동권리는 아동이 자신들과 관련된 이슈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포함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를 성숙시킨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관련 국내 법제도와 정책추진 사항에 대해 아동권리협약(CRC)이나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다만 협약 비준 국가에서의 권고적·선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할 수 있다[4],[9].

표 1. UN아동권리협약(CRC)의 아동 4대 기본권
Table 1. Children's Fundamental Right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기본권	주요내용	CRC 관련 조항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 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제24조(건강 및 의료) 제26조(사회보장) 제27조(생활보장)
보호권	각종 위험과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형법 등의 폐습 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제3조(아동최선의 이익) 제18조(아동이익 극대화) 제23조(장애아동의 보호)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제3조, 제17조, 제18조 제28조(교육),제29조(교육) 제31조(놀이와 오락, 문화활동)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의견표명)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7조(정보에의 접근)

III. 아동친화도시의 기원과 주요특징

유니세프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은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 2/3이상이 도시에 살고,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구는 지금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1세기 의 가장 큰 변화는 도시화로 이에 대한 지방 정부의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1996년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UN Habitat Ⅱ)는 도시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결의하며, '아동의 안녕이야말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 지표'임을 선언하였다[1]. 아동친화도시의 시작은 1996년 개최된 유엔의 인간정주회의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개최된 유엔회의에서 최초로 발의되었고, 2000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인간정주회의(UN Habitat Ⅱ Conference)1)에서는 도시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열악한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 하고 아동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살기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그 핵심 요건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좋은 정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하고 지방정부차원에서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구체적인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1-2]. 이어 1997년 유니세프를 아동친화도시운동(Child Friendly Cites Initiative)의 공식 파트너로 지정하였으며 2002년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유엔 아동특별총회를 통해 아동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과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었다. 이 와 관련하여 당사국과 지역사회차원에서 아동학대예방이나 아동실종방지 및 건전한 아동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고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y)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이를 인증하는 작업들이 이어지고 있다[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자가평가와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현재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된 전 세계 도시는 30개국 1,300여개이다. 국내에서는 전국 4곳의 기초자치단체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서울 성북구가 최초로 2013년 11월에, 전북 완주

군은 2016년 5월에, 부산 금정구는 2016년 9월에, 군산시는 2016년 10월에 아동친화도시로 각각 인증을 받았다[5].

유럽의 경우 아동친화도시유럽네트워크를 구성하여(European Ne twork of Child Friendly Cities 이하 EN-CFC), 유럽 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UN 아동권리협약(CRC)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실천 의지를 확산시키고 구체적 실행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구성되었다.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15개 국가의 다수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단위로 지속적인 참여 회원국 또는 참여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표. 2>. 아동의 일상생활과 기회의증진, 그리고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비정부 기구,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의 인적자본과 지식 및 다채로운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9]. 특히 EN-CFC는 사회경제적, 정치적으로 아동발달과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강조하고 있으며, UN아동권리협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조성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차원, 개별 국가차원, 그리고 지방정부차원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활동하고 있다[9].

표 2. 지역기반 주요활동 내용
Table 2. Major activities based on the area

지역기반	주요활동내용 및 전략
유럽연합차원 (European Level)	- 도시와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아동관련 정책적 쟁점 도출과 활동전략 마련 - 아동청소년 정책 개발과 모니터링 - 아동권리협약 이행 증진과 모니터링 - 정책적,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기획 등
국가적 차원 National Level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정보 제공 및 정보 확산 -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정치인, 정책의사결정자의 상호 교류 - 다양한 유관매체와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 우수사례 공유 및 도농간 격차 해소방안 마련 - 정치인, 의사결정자 및 아동친화도시 관련 활동가, 전문가 협력관계 기반 제공 - 관련 행사 주체(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등) - 국가간 회의 개최
지역차원 Local Level	-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권리 이행력 확보 옹호활동 -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정치인, 정책의사결정자의 상호 교류 - 아동참여 촉진 - 취약계층 아동 보호활동

자료: UNICEF 아동친화도시 자료 재구성. 박세경 2016.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는 아동친화도시의 친화도 영역을 지정하여, 아동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표 3>. 친화도 영역은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환경, 사생활(가정)의 6개영역으로 구분되며 각영역별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실태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실태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각 영역별 친화도는 실태조사를 위한 기준으로서 활용될 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한국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범주로서도 활용된다[1,2 4].

표 3.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친화도 영역
Table3. UNICEF Korea Committee Child Friendly City Affinity Area

친화도 영역	내 용
놀이와 여가	동네 놀이·운동 장소, 놀고 쉴 시간, 동네 놀이터 이용,동네 자연환경, 문화행사 및 축제 참여, 방과 후 프로그램·단체 활동 참여 등
참여와 시민권	동네 변화 기여도, 의사결정 참여, 의원·시장의 의견 청취, 정책 의견전달 여부, 어린이 권리 의식도,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접근, 프로그램과 서비스 예산 관련 의견 개진 등
안전과 보호	대중교통 이용 시 안전도, 보행 및 자전거 이용 안전, 위험시 도움 요청, 친구의 괴롭힘 여부, 납치로부터의 안전,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차별 없는 존중, 재난대처 방법, 인터넷 위험성 등
건강과 위생	의료기관 충분 여부, 발달 관련 문의 의료기관 충분 여부, 심리치료 서비스 인식, 에이즈·성관계에 대한

	지원 여부, 공중화장실 충분 여부, 동네 청결도 등
교육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아동권리 및 유엔 아동권리협약 교육,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 학교 의사결정 참여, 고민상담 가능한 교사의 충분 정도, 다문화이해 교육, 장애학생의 동등한 대우, 괴롭힘으로부터의 안전, 직업관련 체험 프로그램 충분 제공 여부 등
사생활(가정)	집에서의 마실 물과 씻을 물 충분 정도, 집에서의 편안함 정도, 마약·약물로부터의 안전, 폭력집단으로부터의 안전, 유괴·납치로부터의 안전, 폭력으로부터의 안전, 가족 외 상담자 여부 등

Ⅳ. 보편적 복지로서의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복지제도 개편의 논의 중에 주목할 점은 복지제도의 주요 수혜대상이 과거에는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논의된 반면, 최근에는 복지제도의 주요 수혜 범위가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10].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복지 역시 기존의 선별주의적이고 잔여주의적이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 성격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인권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성인과 동일한 권리를 주어야 함이 기본정신인 아동친화도시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아동복지의 새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상당부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의 권리를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당사자의 권리이해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거주 주민이 인식하는 아동의 권리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가 아동의 권리이해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부족, 아동의 참여권 확대부족, 교육의 지나친 경쟁성향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11].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 후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및 위원회 권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권리 보장 기반을 넓혀왔으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념 및 관련 규정이 국내법적 효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아동권리에 관한 아동 및 어른의 인식 수준도 낮은 단계이다[12].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정책의 방향은 보편주의에 기초를 둔 정책설계가 필요한데, 종래에 고착되어온 잔여주의적, 선별주의적 기조로는 아동의 시민권적 권리를 확보하거나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져오므로 보편주의로 근본 정책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논의는 보편적 복지를 위한 아동복지패러다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보편주의 관점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은 기존의 잔여주의적 복지를 벗어난, 지역사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사회 아동과 구성원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변화시키는 과정이 특징이다[4].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하고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은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 굿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설계가 필요하다[12]. 아동을 지역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방정부는 물론, 관련 민간단체와 지역사회구성원 모두의 협력과 활동을 필요로 한다[9].

Ⅴ. 결론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 후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및 위원회 권고 등의 과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보장의 기반을 다져왔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한 규정이 국내의 법적 효력과 충분한 긴밀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동권리 수준은 매우 낮은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잔여적이고 선별적인

수준이었기에 현 정부가 끌고 가는 보편적 복지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에 기초를 둔 정책설계는 결국 모든 아동의 복지를 추구하고, 아동의 시민권적 권리 확보에 기본 토대를 형성하기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논의는 보편적복지를 위한 아동복지패러다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현재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은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한 보편주의 관점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의 잔여주의적 복지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인과 아동이 함께 정책을 생각하고 변화되는 지역사회를 위한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은 지속가능성을 지닌 민주적인 사회, 굿 거버넌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집중하고 이를 위한 아동참여형 정책개발과 설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의 적극적 참여와 민간단체, 지역사회구성원의 협력은 아동의 속한 지방정부, 지자체가 어떠한 원동력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다를 수 있다. 즉,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아동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권리에 관해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동의 권리에 생소하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낮다. 아동복지 예산에 있어서도 타 분야 복지예산에 비해 턱 없이 모자람에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 역시 낮다. 이는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에 기인한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능동적 주체로서의 성인의 역할은 아동권리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아동당사자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에 관한 주민홍보가 요청된다. 지자체의 경우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정보와 인식을 갖고 있는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주민들이 경험하는 만족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지도 검점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 아동의 참여가 확대 되어야 한다.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지원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의견을 고려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아동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아동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의 의견과 경험을 존중하는 것은 아동친화도시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를 안내할 대부분의 성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해 보지 못하였기에, 아동을 정책 만들기의 협력자로 보는 시각이 매우 낮다. 그러하기에 더욱 더 의식적인 수준에서 아동의 참여 확대와 지역 정책활동에 참여보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매뉴얼한 된 운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셋째, 아동권리를 교육할 수 있는 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 되어야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의 네트워크 조성은 아동친화도시의 필수 사항이지만 그 첫 단계로 학교 자원은 아동권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장은 아동권리를 교육하고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지역사회 자원이다. 특히, 학교는 아동의 권리를 교육할 수 있는 구심체이기도 하다. 인권교육 측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 측면에서 아동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개념과 함의가 교육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References

[1] http://childfriendlycities.or

[2] http://http://childfriendlycities.kr/origin

[3]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on Developing Plan for Child Freindly Cities. " Vol.18, No.8, pp. 36-50, 2018.

[4] G. S. Park, "Research on Child Friendly City Action Plan for Creating Child Friendly City."BUSAN WOMEN and DEVELOPMENT INSTITUTE, PP/ 1-280, 2017.

[5] T. S. Lee, "Child Welfare in South Korea and UNICEF Child Friendly Cities." Journal of Global Social Welfare."Vol. 6, No.2, pp57-80, 2016.

[6] S. J. Kwon, S. W. Kang, H. J. You, J. S. Byun,"Exploring the meaning of hild-friendly-city through understandings of child-rights-advocacy: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ase of O-city in Gyeonggi Provinc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21, No.4, pp. 449-477.
DOI: http://doi.org/10.21459/kccr.2017.21.4.449

[7] S. A. Hong, J. Y. Lee, "Parents and Community service provider's assessment of Child Friendly Cities." Research on child care policy, Vol.5, No1, pp149-172, 2011.
[8] S. A. Hong, "Children and Adolescents' Assessments of Child Friendly Cities."The Korean Children's Institute, Vol.32, No2, pp.53-70, 2011.
[9] S. K. Park, "Children's Rights and Child Friendly Cities in Selected European Countries." Korea Health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Health and Welfare Forum, No, 233, pp62-72, 2016.
[10] Y. J. Chun, S. T. Kim, J. Y. Kim, "Economic Effects of Paradigm Change in Social Welfare Policy - Universal Social Welfare vs. Targeted Social Welfare." Economics Research, Vol.61. No. 2, pp.69-111, 2013.
[11] K. Hee. Byon, " (2018)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 Based on the Recognition and Practice of Children's Human Rights-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Social Economy&Policy studies, Vol. 8, No,3, pp1-34, 2018.
[12] Y. M. Seo, "An Exploratory Study on Child Friendly Cities of Local Government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2, No2, pp.383-407, 2018.
[13] J.G. Geon. "Role of local government to realize universal welfare system."Autonomous development, pp.85-91, 2010
[14] S. L. Kim, " Analysis on the Effect of Child-Friendly-Cities upon the Satisfaction Level of Citizens : focused on the case of Seodaemun-gu, Kore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2018.